

1. 의결주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제처의 행정규칙 정비 대상(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고시) 투명성·명확성 제고)에 포함된 내용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업진단보고서 작성에 관한 중요사항 명시(안 제16조제4항)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에 포함되어야 할 진단자, 진단방법, 진단 보고 및 서류보존 등을 명시 함(고시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

나.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 보완(안 제53조제1항제3호)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조항(제1호 의2)은 실제 시·도지사 업무이나, 중앙전파관리소장 업무에 포함되어 있어 제외 함

다. 시공능력평가 수수료 현실화(안 별표 9)

시공능력평가를 받으려는 자의 수수료를 현행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기업진단보고서는”을 “기업진단보고서는 진단자, 진단 방법, 진단보고 및 서류보존 등에 대해”로 한다.

제53조제1항제3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호·제2호·제3호”로 한다.

별표 9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시공능력평가를 받으려는 자	10만원
--------------------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 개정규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u>기업진단</u> <u>보고서</u> 는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 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제16조(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기업진단</u> <u>보고서</u> 는 진단자, 진단방법, <u>진단보고 및 서류보존 등에</u> <u>대해</u> ----- ----- -----.
제5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 장에게 위임한다. 1. · 2. (생 략) 3. 법 제78조제1항 <u>제1호부터 제</u> <u>3호까지</u> ,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5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u>제1호 · 제2호 · 제3호</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6423